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6. 2.

행 정 위 원 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2월 13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17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2월 20일

제1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-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중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통장의 “주인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” 및 장학생의 “품행이 극히 불량”이라는 문구를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로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,
- 2001.10.20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의 확대로 2002 학년도부터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이 불필요하게 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1조(목적)중
“중·고등학교”를 “고등학교”로 한다.
- 조례 제5조(선발) 제②항 삭제
- 조례 제9조(지급정지) 제①항 제1호 및 제3호 개정
 - 1. 보호자인 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둔 때
 - 3.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(제23조)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해당없음
- 기 타 :

- 입법예고(2006. 1. 19 ~ 2006. 2. 8) 결과 : 의견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 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고,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장학생의 자격이 제3조에서 “유공 장학생” 과 “특기장학생” 으로 규정되어 있고, 제5조에서 “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” 는 선발순위 조정의 1개 사항일 뿐이고,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려한다면 제1조(목적)의 “경제적 사정” 이란 조문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아울러 제3조 제1항도 “장학생은 통장의 자녀” 는 “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” 로 개정하여 위촉되지 얼마되지 않은 통장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됨.

4. 修正案 要旨

가. 수정요지

-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제1조(목적)의 “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“조문 삭제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제1조(목적)의 조문 중 “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” 를 삭제

5. 審査結果 : 修正案 可決